

### 3. 防火規程

우선 생소하기만한 이 규정이 官公署, 國公立教育施設 기타 公共施設과 政府投資機關의 建物, 施設 등에 대한 災害防止를 目的으로 制定되었으며 當協會도 이러한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이 규정을 소개한다.

#### 防火規程

(1970年 6月19日)  
大統領令 第5091號

改正

1984. 8. 28 領 11489 號

#### 第1章 總 則

**第1條(目的)** 本令은 官公署, 國公立教育施設 기타 公共施設과 政府投資機關(이하 각 機關이라 한다)의 建物, 工作物, 施設 및 物品 등 財產의 火災를 防止하여 災害로부터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.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**第2條(適用範圍)** 本令은 第1條에 規定한 각 機關에 대하여 適用한다.

#### 第2章 責 任

**第3條(機關長의 定義)** 機關長이라 함은 다음에 列舉하는 者를 말한다.

- 同一系列의 機關이 同一區域內의 建物 및 施設을 使用할 때에는 最高職位者
- 同一區域內에 2個 이상의 機關이 位置하였을 때에는 各其機關의 最高職位者
- 同一系列의 機關이 2個 이상 面域으로 分散位置하였을 때에는 그 面域의 最高職位者

**第4條(機關長의 責任)** 機關長은 다음 事項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.

- 消防 및 防火施設의 設置 및 維持 · 管理
- 建物 및 施設에 대한 消防計劃의 樹立 및 實施
- 消防訓練의 實施 및 監督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**第5條(防火管理者의 責任)** 각 機關長은 防火管理者를 任命하여야 하며 防火管理者는 다음 事項에 대한 責任을 진다.

- 第4條 各號의 消防에 관한 業務遂行에 있어서의 機關長의 보좌
- 消防 및 防火施設에 대한 자체消防檢查計劃의 樹立 및 實施
- 防火巡察計劃의 樹立 · 實施 및 監督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**第6條(火氣團束責任者の 責任)** 機關長은 各室 또는 施設에 正, 副各 1人의 火氣團束責任者를 任命하여야 하며 責任者は 各室의 長 또는 施設物의 使用責任者로 하고 다음 事項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.

- 室内 및 責任區域內의 火氣團束
- 室内 및 責任區域內의 人員에 대한 教育
- 실내 및 責任區域내의 消防 및 防火施設의 維持 · 管理 (1984. 8. 28 本條改正)
- 日課後 火氣團束狀況을 확인한 後宿直者에의 引繼
- 防火日誌의 作成 및 記錄의 維持

**第7條(守衛 및 日直勤務者의 責任)** 守衛 및 日直勤務者(특히 日直勤務者를 두는 경우에 限한다)는 防火에 관하여 다음의 事項에 대한 責任을 진다.

- 日課中의 屋外火氣團束
- 日課中의 公衆集合所 및 公衆 使用施設에 대한 火氣團束

**第8條(宿直者の 責任)** 宿直者は 火氣團束責任者로부터 引受한 團束狀況에 대하여 火氣團束責任者와 同一한 責任을 지며 勤務中 守衛를 指揮監督한다.

#### 第3章 警 報

**第9條(消防信號)** 火災警報는 다음 信號로 써 한다.

- 사이렌에 의한 신호
  - 경계신호 :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
  - 발화신호 :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
  - 해제신호 : 1분간 1회
- 타종에 의한 신호
  - 경계신호 : 1타후 연 2타를 반복
  - 발화신호 : 난타
  - 해제신호 :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**第10條(火災通報 및 信號)** 火災가 발생한 때에는 發見者が 消防署가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義勇消防隊에 火災申告를 함과 동시에 즉시 火氣團束責任者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火氣團束責任者は 火災警報信號를 發하여야 한다 (1984. 8. 28 本條改正).

## 第4章 自衛消防隊의 編成

(1984. 8. 28 本章題目改正)

第11條(自衛消防隊의 編成) 각 機關의 長은 自衛消防隊를 編成하고 그 隊長을 任命한다.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第12條(構成) ①自衛消防隊는 隊長·副隊長 각 1人과 당해 機關에 勤務하는 모든 人員으로 구성하여, 自衛消防隊에 本部分隊·소수방분小隊·방호복구분小隊·의료구호분대·화생방분대를 둔다.

②本部分隊에는 指揮班·訓練班·警報班을, 소수방분(小)대에는 消火班·給水班을, 防護復舊分(小)隊에는 대피반출반·경계반·방호복구반을 의료반 및 후송반을 둔다.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第13條(自衛消防隊의 任務) 自衛消防隊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.

1. 隊長은 自衛消防隊를 編成·指揮·運用한다.
2. 副隊長은 隊長을 補佐하고, 隊長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任務를 代行한다.
3. 本部分隊의 指揮班은 自衛消防隊의 전반적인 指揮 및 각 부서의 任務調整 任務를, 訓練班은 消防計劃에 의한 訓練任務를, 警報班은 火災申告·自體 및 關係機關에의 통보임무를 각각 담당한다.
4. 소수방분(小)대의 消防班은 火災時 消防施設의 조작 및 消火活動勤務를, 給水班은 消防用水의 保存·運搬·供給任務를 각각 담당한다.
5. 防護復舊分(小)隊의 待避搬出班은 火災時 人命救助·待避誘導 및 重要物品의 搬出移動任務를, 警戒班은 防火巡察 등 火災 警戒活動·搬出物件의 警備 및 出入人員의 통제임무를, 防護復舊班은 防火 및 消防施設의 維持管理 및 消防活動上의 障碍物 제거임무를 각각 담당한다.
6. 醫療救護分隊의 醫療班은 환자의 應急處置任務를 後送班은 환자의 緊急後送措置 및 死亡者 안치임무를 각각 담당한다.
7. 化生防分隊는 放射能 물질기타 危險物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한다.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## 第5章 消防訓練

(1984. 8. 28 本章題目改正)

第14條(消防訓練) 각 機關은 모든 人員을 勤務하여 월 1회 이상 消防教育과 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第15條(合同訓練) 각 機關은 年 1회 이상 消防官署와 合同으로 消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第16條(訓練課程) 消防教育 및 訓練에는 最少限 消

防信號·火災申告·自體通報·關係機關에의 連絡·消火, 破壞, 待避, 救護, 搬出 및 警戒에 대한 課程을 포함시켜야 한다.

(1984. 8. 28 本條改正)

第17條(消防守則 및 標語) 各機關은 필요한 消防守則을 制定하여 全員에 熟知시켜야 하며 防火標語를 첨부하여야 한다.

## 第6章 消防 및 防火施設

(1984. 8. 28 本章題目改正)

第18條(消防 및 防火施設) 각 機關은 消防法에 의한 消防施設 및 建築法에 의한 防火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(1984. 8. 28 本條改正)

第19條(1984. 8. 28 削除)

第20條(1984. 8. 28 削除)

第21條(1984. 8. 28 削除)

第22條(消防 및 防火施設의 維持·管理) 각 機關長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施設을 적절히 管理維持하고 隨時 使用할 수 있도록 2人 이상의 人員을 選定任命하여야 한다.

第23條(危險物取扱) 각 機關은 引火性 또는 發火性 危險物을 消防法의 規定에 의하여 取扱하여야 한다. (1984. 8. 28 本條改正)

## 第7章 消防検査

(1984. 8. 28 本章改正)

第24條(消防検査) ①각 機關은 機關長 責任下에 消防官署 또는 消防專門機關의 정밀 消防検査를 年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

②管轄消防署長(消防署가 설치되지 아니한 地域은 市長·郡守)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關係機關長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機關에 대하여 消防検査를 할 수 있다.

第25條(自體消防検査) 각 機關은 自體計劃을樹立하여 消防検査를 實施해야 하며 電氣事業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調査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韓國電氣安全公社의 協助를 얻어 年 1회 이상屋內電氣工作物의 整備를 實施하여야 한다.

## 第8章 其他

第26條(例規) 各機關長은 本令의 範圍内에서 필요한 例規를 制定할 수 있다.

### 附 則

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
### 附 則

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